

심리사법안이 규정한 심리사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논의*


| 박 중 규 | 장 은 진 | 정 경 미 [†] |
|--------------------|------------------------|--------------------|
|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한국심리학회가 지난 수년간 의회와 정부에 입법을 건의해왔던 <심리사법안>이 22년 4월 29일에 서정숙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안의 심리사는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본고는 한국심리학회(2020)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국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과 미국심리학회 및 유럽심리사협회연맹의 심리사 자격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부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심리사는 OECD 수준의 전문성과 유능성을 갖추어 국제적 수준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야 함을 제안하였다. 심리사의 업무는 인간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심리서비스로 정의되었기에 핵심 역량과 유능성이 보장될만큼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의 논의와 제안이 향후 하위 법령 성안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심리사, 교육, 수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미국심리학회, 유럽심리사협회연맹

* 본 논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결과보고서(한국심리학회, 202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kmchung@yonsei.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전달체계가 취약하며,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인 ‘심리사(psychologist)’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인구 100,000명당 심리사의 수효 현황은 미국 33명, 영국 16명, OECD 회원국 평균 26명이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단지 1명에 불과하였다(<https://dx.doi.org/10.1787/888933030724>). 2012년 당시 국가통계로써 보고된 인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서만 계상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하여 현재 인력수효¹⁾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사 및 심리서비스에 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심리사 양성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심리학 또는 심리학적, 심리사(psychologist)라는 자격명칭(title)과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서비스 제공자는 심리학 분야에서 인정된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이들은 개인, 집단, 사업체, 및 각종 조직체를 대상으로 활동한다(Siegel, 2022). 심리사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 개업, 각급 학교, 병원, 군, 법정 및 교정기관, 산업안전 보건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한다(APA, 2022).²⁾

유럽심리사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https://www.efpa.eu/>)의 EuroPsy²⁾는 “심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반

적인 목표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심리학적 원리, 지식, 모형과 방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개인, 집단, 조직과 사회의 웰빙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로 APA(2022)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자격을 소개하고 있다(EFPA, 2022).

이미 국내에도 심리학의 전문가들은 국가 자격 및 민간자격의 소지자로서 의료 및 복지, 법무, 경찰, 군, 행정, 학교, 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한국심리학회, 2020).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인구 100,000명당 수효를 보면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법제화된 인력 수효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국내 ‘심리’ 분야의 국가자격으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및 임상심리사 1급/2급, 인근 분야 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 1급/2급/3급,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다. 이중 교육 및 수련의 기준이 OECD 주요 국가의 심리사와 가장 유사한 것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정도이며, 민간자격 중 일부(예; 한국심리학회의 자격 등)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심리학회, 2020).

하지만, 현행 민간자격의 경우에는 자격 명칭에 ‘심리’를 포함한 경우가 2022년 8월 16일 현재, 무려 4,268건 이상(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 검색된다. 일반 국민은 자격의 명칭만으로는 어떠한 자격이 안전하고도 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최기홍, 2021).

한국심리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Psychology). EFPA가 시행하는 심리학 분야 자격 인증으로 교육, 전문 수련, 역량에 대한 기준인 표준지침을 제공한다(<https://www.europsy.eu/>).

1) 2022년 1월 현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1,8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3.31명으로 환산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428명을 포함시켜도 인구 10만명당 5.9명에 불과하다.

2) EuroPsy: 유럽심리사인증(European Certificate in

위하여 2019년 1월 ‘심리사법 제정을 위한 집중 워크숍(12~13일, 중앙대)’과 ‘심리사법 제정을 위한 회원 공청회(25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최근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핵심역량과 법제화 국제포럼(2022. 3. 24. 국회의원회관)’을 개최하기까지 약 4년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2022년 4월 29일, 법제화의 첫걸음으로서 본문 2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심리사법안>이 대표발의자 서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자 구자근 · 김미애 · 김승수 · 박수영 · 이종배 · 전주혜 · 조은희 · 조대용 · 최춘식 · 황보승희 등 11인의 국회의원에 의하여 입법 발의되었다. 아울러 6월 10일, 우리 학회는 서정숙 의원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국회의원회관)’를 주관하여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심리사법안>의 제안 이유는 심리서비스 담당 인력인 심리사를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심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 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법안의 전문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특별호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고는 법안에서 제안된 심리사의 자격기준과 현행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자격기준을 중심으로 향후 <심리사법안>의 하위 법령에서 상세화되어야 할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기타 자격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표 1. 심리사법안의 주요 내용

| |
|---------------------------------|
| 가. 총칙 |
| 1) 심리서비스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
| 2) 심리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 나. 심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안 제5조) |
| 다. 심리사 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9조) |
| 라.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안 제10조) |
| 마. 수련심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
| 바. 한국심리사협회의 설립(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출처: 심리사법안

<심리사법안>에 규정된 심리사의 자격기준은 한국심리학회(2020)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과 동일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첫째, 1973년부터 한국심리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원형은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였으며, 이는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과 3년의 수련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현행 심리분야에서 최상위 국가자격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심리학에 대한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과 3년의 수련을 요구한다. 이는 1995년 <정보통신법> 제정 당시 한국심리학회의 심리전문가 기준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염태호, 1996). 셋째, 심리서비스 입법연구(한국심리학회, 2020)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및 국공립 의료기관, 사설 심리서비스 기관 재직 심리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2020년 10월 16일부터 24일 사이 시행) 결과, 심리학 석사 이상의 교육과 3년의 수련이 가장 적합하다고 조사되었다. 넷째, EU 회원국 대부분에

3)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O2H014Z2S1V1Z6G0Z7E4T0C2K2S4

서 통용되는 OECD 평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유럽심리사협회연맹(EFPA; 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의 유럽심리사인증(EuroPsy; 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EuroPsy는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교과과정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과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하에 1~2년 이상의 기초 및 전문분야 수련을 요구한다. 2022년 현재 EFPA의 36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이 EuroPsy를 시행 중이며, 이는 유럽연합 국가 간에서 전문가 자격기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유럽전문직자격증명서(European Professional Card) 제도에 따른 것으로, 각국이 발급하는 면허는 아니나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표준(standard)으로서 전문자격인증준칙(professional qualifications directive)에 해당한다(EFPA, 2022). EuroPsy의 기준은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실무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도 동등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상호인정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또한 명시하고 있다(EFPA, 2022).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박사급 심리사 자격에 비해서 학위요건은 다소 낮으나, 학사 및 석사학위의 전체 교과 과정 및 실무수련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비교

심리사의 자격기준은 기존 심리 분야의 자격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OECD 수준과 국가자격으로서 가장 유사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자격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심리사법안>의 심리사와 비교하였다(표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공통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개별업무로는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수행한다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2조 1항 ①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②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4) 또 하나의 심리 분야 국가자격증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이 있으나, 이의 자격기준은 논란이 많으며 OECD 수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표 2. 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자격기준 비교

| 심리사(안)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p>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p> | <p>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p> |
| <p>제5조(심리사의 자격) 3.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과정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p>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9호) 제4조(인증과목) 이수 필수</p> |
| <p>제15조(수련심리사) ② 수련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 수련심리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심리사는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p> | <p>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에 따라 3년간 400시간의 이론교육, 2,540시간의 실습, 60시간의 학술활동으로 총 3,000시간의 수련시간 이수 필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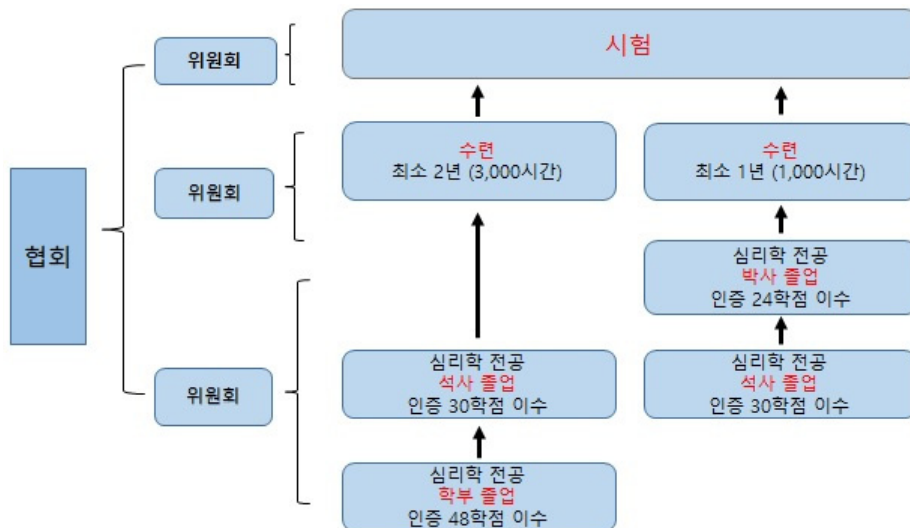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사의 자격 취득 과정 제안 (출처: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사법안>에서 심리사의 업무는 “*심리 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심리 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법안 3조)*”이며, 이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에 비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심리사의 자격취득 과정에 관한 제안은 개략적으로 그림 1과 같다.

심리사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심리사법안 제5조)*”이다. 제 5조 3항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 과정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교육과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에 관한 논의

주요 국가에서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본 특별호의 다른 논문에서도 또한 일정 부분 다루고 있다.

박사급의 교육요건(예: 미국, 캐나다 등)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부 전공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APA(2013)는 학부 심리학 교육의 학습목표(Suggested Learning Objectives; 이하 SLO)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EuroPsy나 영국의 임상심리사(Davey, 2021), 호주, 일본, 대만의 경우는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학사 학위과정부터 심리학 과목의 이수를 정하고 있다(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사의 교육 기준

아직까지 심리학 전공의 인증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여타 전문 직종(예; 의학, 법학, 약학, 공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건축학 등)의 경우처럼 학부 및 대학원에서 이수 과목을 규정하는 ‘전공인증제’를 참고하여 볼 수 있다.

공학인증의 경우 학부 전공 이수학점은 전공기준으로 50 ~ 60학점 이수를 요구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22).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20)은 간호학 전공을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로 규정한다. 학점은행제로 알려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8. 개정)은 전공학점을 60학점으로 규정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학사학위 이상을 포함하는 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2022)의 지침 내에서 각 의과대학이 정한 교육과정 체계를 따른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의예과 총 80학점, 의학과 181학점이다(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고려대학교의 경우, 의예과 75학점 이상, 의학과 172학점이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미국심리학회는 학부 과정 심리학 교육의 학습목표를 ① 심리학의 지식 기초, ② 과학적 탐구와 비판적 사고, ③ 윤리적 사회적 책임성, ④ 의사소통, ⑤ 전문직업적 발달로서 제안한다(APA, 2013). 대학원 과정에서는 전미 심리학자자격협회(ASPPB;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oards)가 정한 전문심리학 시험(EPPP;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의 인증 기준을 대학원 과정(최종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에서 요구한다(표 3)(ASPPB, 2017). EPPP 인증기준은 심리사의 교육이 기초와 응용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

표 3. EPPP 인증기준

※ 각 학위 과정의 이수학점은 9가지 영역을 누적하여 100%가 되어야 한다.

1.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9~10 %)
2. 행동의 인지 - 정서적 기초(9~10 %)
3. 행동의 사회 - 문화적 기초(9~10 %)
4. 성장과 전 생애 발달(9~10 %)
5. 평가와 진단(15~16 %)
6. 치료, 개입, 예방 및 감독(15~16 %)
7. 실험 방법 및 통계(9~10 %)
8. 윤리/법/전문가 이슈(9~10 %)
9. 기타 선택과목 (최신경향, 다학제 접근 등)
(7~8%)

준다.

유럽연합의 EuroPsy는 학부과정 1단계, 대학원 과정 2단계, 수련과정 3단계로 교과과정을 규정한다. 특히 1단계 및 2단계의 학사와 석사학위 과정 동안 지식과 기술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데 세부 내용은 ① 오리엔테이션-방법론, 역사, 전문분야 개관, ② 심리학의 이론-일반, 신경, 생물, 개인차, 사회, 발달, 성격, 직업 및 조직, 임상 및 건강, 교육, 정신병리학, ③ 기법적 이론과 기술 - 자료 및 검사이론, 설문지 및 평가, 검사 제작 ④ 연구방법론 지식 및 분석 기술 ⑤ 윤리규정과 직업윤리, ⑥ 학문적 기술 - 정보수집, 논문읽기 및 작성, 연구윤리, ⑦ 비심리학적 이론 지식 - 인식론, 철학, 사회학, 인류학 - 으로 구성된다. 2단계에서는 특히 독립적인 직업적 실무를 준비하고 일정 수준의 연구기술을 갖추는 대학원 과정으로 학사학위 과정의 각 영역별로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EFPA, 2009).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교육기준은 이수과목을 상세히 나열하는 형태

이며, 심리사의 경우에도 이수과목 또는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교과과정이 규정될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169호) 제4조(인정과목)에 따라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대학원에서 최소 7과목 이상의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상심리 관련 필수과목(4과목)은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사례)이며,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은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신경(임상)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 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이다(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와 3년의 수련을 요구하기에 EuroPsy와 외견상 교육 및 수련기간이 유사하다. 하지만, 학위 과정 동안의 이수과목 수는 7개뿐이어서 EPPP의 인증기준(ASPPB, 2017)이나 EuroPsy의 교과과정(EFPA, 2009)에 비하면 이수해야할 교과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3년의 수련 동안 400시간의 이론교육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통해 일부 보완될 수는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1급과 같은 영역에서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의 과목이수 규정(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이수 과목을 규정하는 예시으로써 참조될 수 있다.

통상 학위 과정에서 한 과목은 3학점으로 환산되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석사과정은 7과목 21학점, 학사과정은 10과목 30학점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로는 ASPPB의 EPPP 인증기준(표 3)에 비교하면,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행동의 인지적 정서적 기초, 성장과 전생애 발달, 윤리적 법적, 직업적 주요 문제 등의 영역에 대한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침례신학대학교, 2019). 심리학 전공 유무에 따라 심리학 교육에 근간이 되는 기초교육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6~2017년에 조사된 심리학 관련 학사학위 과정의 교과 개설현황을 참고하여 국내 65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심리학과 및 ‘심리가 포함된 학과 또는 전공’학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한국심리학회, 2022a). 국내 대학교 중 ‘심리학과’로 개설된 학과는 27개였으며, 학과명에 ‘심리’가 포함된 학과 또는 전공은 38개(예; **심리**학과 등)였다. 27개의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심리학 개론, 심리통계 및 분석, 사회 및 문화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 및 기억심리학, 실험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측정, 생리(생물)심리학/심리측정, 인지심리학, 인지신경과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개설 비율은 90% 이상이었다. 여기에 동기 및 정서심리학, 건강심리학, 지각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도 70% 이상의 학과에서 개설되었다. 심리학과인 경우 16개 과목이 70% 이상의 개설비율을 보였다(표 4). 이에 비해, 현장실습/연구실습, 언어심리학, 교육 및 학교심리학, 공학심리학, 긍정 및 행복심리학, 코칭심리학, 성 심리학, 행동분석의 경우 개설비율은 50%를 넘지 못하였다.

학과명에 ‘심리’를 포함하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학개론, 학습 및 기억심리학, 발달심리학, 현장실습/연구실습의 7개 과목이 70% 이상에서 개설되었다.

현황 조사는 학부의 심리학 교육의 경우 ‘심리학과’로 개설된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표 4. 심리학과인 주요 개설 과목 현황

| 과목명 | 개설 비율 | 과목명 | 개설 비율 |
|-------------|------------------|--------------|------------------|
| 심리학개론 | 27/27 (100%) | 인지심리학 | 26/27 (96.3%) |
| 심리통계 및 분석 | 27/27 (100%) | 성격/생물/인지신경과학 | 26/27 (96.3%) |
| 사회 및 문화심리학 | 27/27 (100%) | 산업 및 조직 심리학 | 26/27 (96.3%) |
| 임상심리학 | 27/27 (100%) | 동기 및 정서심리학 | 22/27 (81.5%) |
| 상담심리학 | 27/27 (100%) | 건강심리학 | 21/27 (77.8%) |
| 성격심리학 | 27/27 (100%) | 지각심리학 | 20/27 (74.1%) |
| 학습 및 기억 심리학 | 27/27 (100%) |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 19/27 (70.4%) |
| 실험심리학/심리측정 | 26/27 (96.3%) | 법정 및 범죄심리학 | 18/27 (66.7%) |
| 발달심리학 | 26/27 (96.3%) | | |

비교적 유사한 교과과정으로 기초 및 응용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심리’가 포함된 학과에서는 주로 응용 과목이 개설되고 교과과정의 공통된 과목 수가 적은 양상이 현저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는 심리사의 핵심역량의 기초가 되는 학부교육에 관한 합의(학부 전공인증제)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전문직이 전공인증제를 시행하듯이, 한국심리학회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심리사법의 시행에 따라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부와 대학원에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이므로 학회도 자체적으로 인증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2020)는 ‘심리서비스 입법연구’에서 심리사의 교육 기준으로, 학사와 석사를 이수하는 경우는 78학점 이상으로, 석사와 박사를 이수하는 경우는 54학점 이상을 제안하였다(그림 1). 동시에 EPPP의 기준(표 3) 및 EuroPsy의 교과과정에 상응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의 교과내용을 갖춰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학점은 국내의 여러 전공인증제가 제시하는 이수학점 범위 및 통상적인 학사와 대학원의 전공인정 수준과 유사하다. 제안된 심리사의 교육기준은 전문성과 유능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한국심리학회, 2022b).

심리사의 수련 기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에 따라 3년간 400시간의 이론교육, 2,540시간의 실습, 60시간의 학술활동으로 총 3,000시간의 수련시간을 이수

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아울러 고시로서 이론교육과 실습, 학술활동의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해진 형식의 기준은 심리사의 수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자격 이외에도 법안의 요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으로서 한국심리학회의 전문가 자격 등의 다양한 수련도 역시 인정 가능할 수 있다.

<심리사법안>이 제안하는 심리사는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법안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수련심리사는 다음과 같다.

“① 수련심리사는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 과목과 실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심리사의 책임 감독 하에 심리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련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 수련심리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심리사는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수련심리사는 제3조에 따른 심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심리사의 선발, 수련기간, 수련내용, 수련평가 및 탈락, 근로기준, 수련심리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심리사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심리사법안 제15조)”

법안에 따라 수련의 개략적인 기준(표 5)은

표 5. 심리사 수련 기준

- 자격심의회위원회의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심리사의 지도 감독
- 석사 후: 3,000 시간 (연 최대 1,500 시간)
- 박사 후: 1,000 시간
- 수련은 인증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심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있으며, 향후 대통령령과 고시가 정해져야 한다. 앞서 심리사의 교육이 국제적인 기준에 상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듯이, 수련의 경우에도 적격수준의 실무능력을 보증하려면 지도 감독이 필수적이다(ASPPB, 2017).

북미 및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는 ‘근거기반실천’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하도록 규제하며 심리사는 주요인력으로 활약한다(APS, 2018; NHS, 2016).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과학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수련이 국내 심리사 수련내용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사법안>은 제6조(심리사의 전문영역)를 두었기에, 향후 심리사는 기본 자격과 함께 전문영역을 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수련의 세부 내용은, 전체 3,000시간 중에서 심리사의 업무(예;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며, 향후 전문영역(예; 임상, 상담, 범죄, 건강, 발달, 중독 등)별로 좀 더 특화된 수련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심리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수련의 세부내용도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심리사 자격 관리에 관한 논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심리사 자격은 심리학기본법(model ACT)에 의거하여 전미심리학자협회(ASPPB)가 주별로 면허(license)로서 관리한다(ASPPB, 2017). 영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호전문직위원회(HCPC; Health & Care Professions Council)가 적정 훈련을 받아 등록된 경우에만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Davey, 2021).

<심리사법안> 제8조는 심리사 자격심의회위원회를 두어 심리사의 교육, 수련, 자격관리를 관장하도록 한다.

“① 심리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회위원회를 둔다. ② 심리사 자격심의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교육인증평가소위원회
2. 실무수련인증평가소위원회
3. 자격관리심의소위원회

③ 심리사 자격심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심리사법안 제8조)”

<심리사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심리사라는 보호된 자격명(protected titl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자격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심리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국가마다 심리사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는 다분히 상이하겠지만, 심리사 자격 규제의 공통사항으로는 (1) 적정

표 6.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심리사 관련 교육기관 및 수련기관 전체 총원에 관한 규정
- 심리사 관련 전공 교수에 대한 자격 규정
- 대학원의 전공 교수 대 학생 비율 관련 규정
- 심리사 교육의 기초 및 응용 과목 및 내용 규정
- 대학 및 대학원 실습 과목에 대한 규정
- 최저 이수 학점에 관한 규정
-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
- 수련기관에 관한 규정
- 수련기간 및 수련 유형에 관한 규정
- 수련심리사 및 수련감독자에 관한 규정
- 자격의 재인증에 관한 규정
- 수련기관 인증 평가에 관한 규정

수준의 인증된 교육 이수, (2) 지도 감독을 받은 임상경험 수료, (3) 적격성 시험을 포함한다(Davey, 2021). 향후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세부사항들은 표 6의 내용으로 예시될 수 있다.

<심리사법안>은“법안 4조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다른 자격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심리사법이 제정되어도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의 업무를 제한할 수 없다. 더욱이 법안은 향후 5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민간자격 소지자의 경우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사법안>이 시행하려면 아직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의결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발의된 법안의 수정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심리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제정과정에서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학회의 주도적 의견이 매우 절실한 사안들임을 또한 강조한다. 심리사의 자격기준과 업무에 관해서는 국제심리과학연맹(IUPsys;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이나 유럽심리사협회연맹, 북미의 ASPBB 등의 국제적인 예들도 면밀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심리사는 인간 행동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심리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정신건강 영역을 넘어 이미 법무, 경찰, 국방, 교육, 행정, 산업 분야에서 심리학 전문가의 활약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공공 및 민간의 수요를 감안할 때 심리사법은 조속히 공포되고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2021).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2015 (KEC2015). (ABEEK-2014-ABE-010). <http://ww.abeek.or.kr/intro/standard>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2022). Criteria for Accrediting Computing Programs 2015. (ABEEK-2014-ABE-010). <http://ww.abeek.or.kr/intro/standard>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2022).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s 2015 (KEC2015). (ABEEK-2014-ABE-010). <http://ww.abeek.or.kr/intro/standard>

-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Enforcement 2022. 4. 8.] [Act No.17217, 2020. 4. 7., Partial Amendment]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APA Guidelines for the Undergraduate Psychology Major (version 2.0).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2). *About APA*.
<https://www.apa.org/about>
-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18). Evidence-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the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www.psychology.org.au/About-Us/What-we-do/advocacy/Position-Papers-Discussion-Papers-and-Reviews/psychological-interventions-mental-disorders>
- Choi, K. H. (2021.6.16). The public should have safe psychological services through legalization of psychotherapists. The Kyunghyang Shinmun.
- Curriculum of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n.d.).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https://medicine.korea.ac.kr/web/www/-89>.
- Curriculum of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n.d.),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ttps://khusm.khu.ac.kr/education/college_medi02.php#n.
- Davey, G. C. (2021). Psychopathology: Research, assessment and treatment in Clinical Psychology, 3rd Edition. Hoboken, NJ: Wiley-BPS Blackwell.
-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Act of Recognition Of Credits[Enforcement 2022. 3. 8.] [Presidential Decree No.32528, 2022. 3. 8., Amendment by Other Act]
- 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2009). EFPA Regulations on EuroPsy and Appendices.
<http://www.europsy.eu/>.
- 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2022). *EuroPsy(or 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http://www.europsy.eu/>.
-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2019). Basic Study on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research report.
<https://www.kohi.or.k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Master Plan (2021~2025). (11-00-000000-00).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111>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0). College Handbook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in Second Half of 2020. (No. 2020-07-02).
<http://www.kabone.or.kr/notice/list/view.do?num=732#>
-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022). ASK2019 Rules of Accreditation.
<https://kimee.or.kr/medical-education/criteria/>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Psychological*

- service legislation stud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2a). *Sharing the Current Status of Psychology Curriculums in Korea and abroad*.
https://www.koreanpsychology.or.kr/user/sub03_3.asp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2b).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ve efforts*. 2022 International Forum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68858
- NHS England and Health Education England. (2016). 2015 IAPT workforce census report.
- Siegel, A. (2022). Psychology regulations in the US and Canada. 022 International Forum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ve efforts*.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68858
- The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roads. (2017). *Supporting member jurisdictions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y of public protection*.
www.asppb.net
- Yeom, T. H. (1996). *30-year history of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1차원고접수 : 2022. 05. 23.

2차원고접수 : 2022. 08. 06.

최종게재결정 : 2022. 08. 08.

Discussion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oposed Psychologist Bill in Korea

Joong Kyu Park

Dep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Daegu University
Professor

Eun Jin Chang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Kyong-Mee Chung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

The Psychologist Bill which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as been trying to enact for the past several years, was proposed by 11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Rep. Seo Jeong-suk on April 29, 2022. The Bill proposes that certified psychologists must obtain 1)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or 2) a master's and doctoral degree by completing courses related to psycholog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llowed by completion of 3,000 hours of practical training for more than two years upon completion of master degree, or 1,000 hours for more than one year during doctoral degree in graduate school. Those who met the educational and practicum requirements must pass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psychologists. In this paper, as matters to be reflected in future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standards for psychologist training course are presented in relation to 1) education certification, 2) training certification, and 3) other topics related to qualification management. Psychological services are not limited to just psychological counseling, but consist of more tasks. The Bill proposed all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sychologists in Korea as a profession that reveals the scientific principles of human behavior and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people's happiness based on psychological science.

Key words : legalization of psychologist, education certification, training practice, qualification committee

부 록 1

심리사법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15453 |
|------------|-------|

발의연월일 : 2022. 4. 29.
 발 의 자 : 서정숙·구자근·김미애
 김승수·박수영·이중배
 전주혜·조은희·조태용
 최춘식·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 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 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총칙

- 1) 심리서비스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함.
- 2) 심리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3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함.

나. 심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함.

다. 심리사 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9조)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함.

라.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안 제10조)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련심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심리사의 실무수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심리사협회의 설립(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부록 2

법률 제 호

심리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3.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이란 심리사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심리검사”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심리학적 측정 도구, 기기, 절차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측정하며 이를 기록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평가”란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적응수준 및 그 밖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상담/심리치료”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7. “심리재활”이란 심리적 장애의 고통과 불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돕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8. “심리교육”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문제 혹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심리자문”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10. “심리연구 및 개발”이란 심리건강 문제, 심리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심리서비스에

활용되는 도구나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함을 말한다.

제3조(심리사의 업무) 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심리 연구 및 개발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

제4조(심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 ①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심리사의 자격

제5조(심리사 자격)

- ① 심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 ②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과정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심리사의 전문영역)

- ① 심리사 중 전문영역을 표기하려는 자는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분야를 표기하지 못한다.
- ③ 전문영역 표기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표기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 ① 심리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교육인증평가소위원회
 2. 실무수련인증평가소위원회
 3. 자격관리심의소위원회
- ③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심리사의 등록과 개업

제9조(등록 및 갱신등록)

- ① 제5조에 따라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비치하는 심리사등록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제18조에 따른 한국심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심리사로서 그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한국심리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

- ①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심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업무의 의무)

심리사, 심리사이었던 사람 또는 사무직원,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안조치 의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검사 및 관련 사항이 대중이나 공공에 노출되어 오용 및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나 교육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수교육)

-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련심리사)

- ① 수련심리사는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 과목과 실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심리사의 책임 감독 하에 심리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수련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 수련심리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심리사는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수련심리사는 제7조에 따른 심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련심리사의 선발, 수련기간, 수련내용, 수련평가 및 탈락, 근로기준, 수련심리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심리사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직원)

- ① 심리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심리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

임이 있다.

제17조(자격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심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심리사협회

제18조(한국심리사협회)

- 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전문성 및 품위 유지, 심리사 직무 개선 및 향상 도모,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⑤ 협회의 조직과 설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회의 정관)

- ①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협회의 가입의무)

제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심리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윤리 규정)

- ① 협회는 그 회원인 심리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심리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직업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한 자
3.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 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한 자. 다만, 수련 심리사로서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지도하에 심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2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분야를 표시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에 한정하여 심리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②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존 자격의 인정 기준, 학문 분야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